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공지능 생성물 활용 선거운동 제한 완화 등〉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30호)
- 차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25호)

2026. 3.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장철민의원안

가. 제 안 자 : 장철민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6. 1. 9.

다. 회 부 일 : 2026. 1. 12.

2. 차지호의원안

가. 제 안 자 : 차지호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1. 14.

다. 회 부 일 : 2026. 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장철민의원안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한 이미지, 음성 및 영상의 제작·게시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또한 선거시기 이전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선거운동 홍보물 일체에 인공지능 이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보편화로 생활 전반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어 현행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최근 경북 안동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선거운동 음향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 바 있음.

또한 선관위가 영상물등 제작의 모든 단계에 인공지능이 사용되어 인공지능 이용 영상물등을 일반 영상물등과 분류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1월 22일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사항을 일률적으로 통합하여 제도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의 내용을 실제와 혼동시킬 목적의 허위 영상은 상시 금지하되, 선거운동 홍보물 제작 일반에 인공지능 사용을 허용하고, 인공지능 이용 표시 의무를 삭제하여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규제 체계로 통일하고자 함(안 제82조의8 등).

2. 차지호의원안

제안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선거 과정에서 딥페이크 등 정교한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및 여론 조작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

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기술 발전 속도에 비추어 규제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규제 방식을 ‘전면 금지’에서 ‘투명성 확보 및 유통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인위적 정보 증폭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자 함.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정보 유통의 시스템적 관리에 관한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벌 및 과태료 규정을 연동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편집된 콘텐츠를 유포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82조의8제1항).

나. 인공지능 생성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유권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와 자동화된 수단 또는 알고리즘의 인위적 증폭을 통해 허위 또는 오도될 수 있는 정보를 대규모로 확산시키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82조의8제2항).

다. 풍자·패러디 등 예술적 표현이나 언론 보도의 경우 표시의무 등의 예외를 인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함(안 제82조의8제3항).

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자동화된 계정 등에 의한 정보 조작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관리조치를 할 노력의무를 부여함
(안 제82조의9).

마.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조직적·고의적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표시의무 위반이나 플랫폼의 관리
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의 경중
에 따라 단계적 제재체계를 마련함(안 제250조의2 및 제261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들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 및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관련 규제와 벌칙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1. 선거운동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 또는 영상 등(딥페이크영상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일절 금지하고, 그 외의 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작·유포하는 딥페이크영상등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만든 것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¹⁾

이는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실제 후보자 등의 영상과 구별이 어려워, 해당 영상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유권자들이 이를 실제 후보자의 영상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는 판단 하에 2023년 12월 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임.

1) 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딥페이크영상등이 실제와 혼동을 일으켜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고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이나, 선거일 전 90일까지의 기간 동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나 영상 등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측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일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개정안들은 ‘선거일 전 90일까지’라는 기간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제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장철민의원안은 기간 제한 없이 인공지능 기술 활용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실제와 혼동시킬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하려는 것이고,

차지호의원안은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작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영상 등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시하는 경우 기간 제한 없이 허용하되, 이를 명시하지 않거나 자동화 계정 등을 통해 허위 정보 등을 대규모로 확산시키는 행위에 한하여 금지하고, 이 경우에도 풍자·패러디 등 예술적 표현이나 언론 보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공지능 생성물임이 명확히 인지되는 경우 사용 가능하도록 하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자동화 계정 등에 의한 허위정보

등의 대규모 확산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조치를 할 노력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현행과 개정안들의 비교 》

구분	현행	장철민의원안	차지호의원안
규제방식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등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 행위 금지 - 그 외 기간에 딥페이크 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것임을 명시해야 함	- 기간 제한 없음 - 허위의 사실을 실제와 혼동시킬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	- 기간 제한 없음 -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을 제작·유포하는 경우 이것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시하여야 함 -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자동화된 계정 등을 활용하여 허위 정보를 대규모로 확산시키는 행위는 금지됨
규제 예외			- 풍자·패러디 또는 예술적 표현으로 인공지능 생성물임이 인지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 언론의 보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맥락상 인공지능 생성물임이 명백한 경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의무 부과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은 생성물의 제작·유포나, 허위정보 등의 대규모 확산 행위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관리조치 의무 부과

※ 관련 법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이를 통해 선거운동 시 인공지능 기술 등의 활용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이를 활용한 영상 등의 제작·게시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들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장철민의원안 제82조의8의 “허위의 사실을 실제와 혼동시킬 목적”이나, 차지호의원안 제82조의8제1항의 “유권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 제82조의8제3항제1호의 “풍자·패러디 또는 예술적 표현” 등과 같은 표현이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차지호의원안 제82조제2항제2호의 “대규모로 확산시키는 행위”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대규모’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²⁾³⁾

또한 차지호의원안 제82조의8제1항과 관련하여 최초 생산자가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제작·유포한 딥페이크영상 등을 다른 사람들이 사실로 여겨 재게시하는 경우, 안 제261조제3항제4호에 따라

2) 특히 해당 규정들은 후술할 벌칙 및 과태료 규정과도 연계되어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이와 관련하여 자동화된 계정을 통한 인위적 증폭행위란 특정 정보의 자연적 확산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조직적·계획적인 확산을 말하는바, 특정 확산이 인위적인 증폭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된 기술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조회수 등이 확연히 늘어 인위적 증폭행위로 의심되는 경우라도 일반 이용자의 자발적인 접근으로 조회수가 늘어난 것인지, 인위적 증폭행위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재게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재게시자 등이 인공지능 생성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생산자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로 하여금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⁴⁾ 차지호의원안과 달리 장철민의원안은 표시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령 정비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⁵⁾

-
- 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영상 등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게시자가 해당 표시만을 잘라내어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지호의원안과 같이 표시의무 부과 및 관련 벌칙규정을 이 법에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취지,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대안의 가능성 및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철민의원안의 경우 딥페이크영상등이 허위의 사실을 실제와 혼동시킬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선거일 90일 전에는 표시의무만 이행하면 자유롭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현재보다 오히려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 제약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차지호의원안 제82조의8제2항 및 제3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거의 공정성’, ‘오인’, ‘오도’, ‘전체적인 맥락’ 등의 표현은 주관적이거나 불명확한 표현으로 그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며,

제82조의8제2항 각호에서는 후보자와 정당만 규정하고 있으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인공지능 생성물이 제작·유포될 수 있으므로, 이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는 입장임.

또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A라는 사람이 특정 인공지능 생성물을 표시하지 않은 채로 외부에 공개하고, B가 해당 콘텐츠를 사실로 판단

하고 재게시했을 때 차지호의원안 제82조의8제2항제1호의 콘텐츠 유포 행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유권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치적 표현을 게시할 수 없는 등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인공지능 기술 활용 관련 처벌 등

현행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딥페이크영상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영상 등을 통해 제작·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⁶⁾

6)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

④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⁷⁾ 그 외 기간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만든 정보임을 표시하지 않고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유포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 딥페이크영상등의 제작·유포등 관련 현행법의 벌금 및 과태료 규정 》

구분	현 행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5조제5항)
그 외 기간 딥페이크영상등 미표시	-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0조제4항전단)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0조제4항후단) - 단순 표시의무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61조제3항제4호)

※ 관련 법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이와 같은 표시의무 및 기간 금지 규제는 딥페이크영상등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2023년 법개정 과정에서 도입된 것인바,⁹⁾ 앞서 검토한 것

7)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⑤ 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9) 공직선거법 [시행 2024.1.29.] [법률 제19855호, 2023.12.28., 일부개정] 개정요약 중

현행법에는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선거운동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딥페이크 영상 관련

처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영상 등의 활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금지 기간'과 '표시의무'라는 이중 규제 체계로 법 집행의 복잡성을 초래하며, 수검자인 후보자 등이 허용과 금지의 경계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철민의원안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라는 기간 구분을 삭제하고, 허위의 사실을 실제와 혼동시킬 목적으로 제작·유포되는 딥페이크영상등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려는 것이고,

차지호의원안은 기간 구분 없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또는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였다는 표시 없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자동화된 계정 등을 사용한 허위 정보의 대규모 확산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과태료는 대규모 확산조치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와 인공지능생성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이를 제작·유포한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규운용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 후보자 영상과 구별이 어려워,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유권자들이 이를 실제 후보자의 영상으로 오인할 소지가 매우 높음.

이에, 선거운동 목적으로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영상 등을 제작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해당 정보가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려는 것임.

《 개정안들의 처벌 등 규정 비교 》

구분	장철민의원안	차지호의원안
처벌	- 기간의 구분 없이 허위의 사실을 실제와 혼동시킬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50조제4항)	- 기간의 구분 없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시하지 않은 딥페이크영상 등이나 자동화된 계정 등을 활용한 대규모 확산의 방법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50조의2제1항) - 기간의 구분 없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시하지 않은 딥페이크영상 등이나 자동화된 계정 등을 활용한 대규모 확산의 방법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50조의2제2항)
과태료		-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합리적 관리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1조제2항제2호) -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작·유포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1조제3항제4호)

※ 관련 법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이와 같이 현행법의 복합적인 규제 체계를 일원화할 경우 후보자 등의 법 해석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통해 선거운동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안들은 바람직한 취지를 갖고 있다고 봄.

다만, 장철민의원안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여부 미표시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 조항을 두지 않고 있는바, 앞서 검토한 것처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누락한 자 등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차지호의원안의 경우 법 제250조제1항 및 제2항이 이미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50조의2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생성물이나 자동화 계정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별도로 규율하려는 것인바, 제250조의2제2항의 목적, 대상, 제한행위가 현행법 제250조의제2항의 구성요건과 사실상 동일하여 기존 조항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별도 처벌 규정 신설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현행법과 차지호의원안의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조항 비교 》

현 행	차지호의원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u>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u> (법 제250조제2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82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u>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인공지능 생성물 또는 이를 이용한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u> (안 제250조의2제2항)

※ 관련 법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한편, 차지호의원안 제261조제2항제2호가 자동화된 계정 등을 통한 확산행위 등 안 제82조의8제2항의 금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관리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바, 앞서 검토한 것처럼 특정 정보의 대규모 확산이 발생한 경우 이것이 인위적인 증폭인지 일반 이용자의 자발적인 접근에 의한 확산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검증된 기술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이를 구별하여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예정하는 해당 조항이 책임주의 원칙 하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¹⁰⁾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취지와 기대효과, 예상되는 부작용,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차지호의원안 제250조의2 제2항의 구성요건이 현행법 제250조제2항과 사실상 동일하여 신설 즉시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해당 조항의 신설이 이루어지는 경우 현행 벌칙 규정인 제250조제4항의 삭제가 필요하며,

자동화된 계정 등을 활용한 인위적인 증폭은 확산 결과(조회수, 추천수, 공유수 등)를 가지고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데, 비정상적 확산·증폭 패턴 연구는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증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된 기술이 존재하지 않아, 조회수 등이 확연히 늘어 증폭 행위라고 의심이 가는 정보를 발견해도 일반 이용자의 자발적인 접근으로 조회수 등이 늘어난 것인지 인위적 증폭인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차지호의원안 제82조의8제4항의 인위적 증폭행위의 세부 판단기준 수립 및 제82조의9제1항의 관리조치 이행여부 판단은 현재 검증된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기술 부재로 인한 전문성·정확성의 한계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임.

또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차지호의원안이 특정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합리적 관리조치의 노력 의무만 부과하고, 노력 여부와 관계 없이 미이행 시 과태료라는 제재를 예정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3

참고

현행 및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장철민의원안	차지호의원안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허위의 사실을 실제와 혼동시킬 목적으로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의8(인공지능 생성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편집된 영상·음성·이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콘텐츠(이하 “인공지능 생성물”이라 한다)를 제작·유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유권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후보자, 정당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또는 선거의 공정성에 관하여 유권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를 유포하는 행위

2. 자동화된 계정, 조직적·계획적 방식 또는 정보유통 알고리즘의 인위적 증폭을 통하여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 관한 허위 또는 오도될 수 있는 정보를 선거인에게 대규모로 확산시키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풍자·패러디 또는 예술적 표현으로서 전체적인 맥락상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2. 언론의 보도를 목적

<신 설>

<신 설>

으로 한 표현으로서
전체적인 맥락상 인
공지능 생성물임이
명백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표시
의 방법 및 절차와 제2
항에 따른 증폭 행위의
세부 판단 기준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으로 정한다.

제82조의9(온라인 플랫폼
을 통한 정보유통의 관
리)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
영자는 해당 플랫폼을
통하여 제82조의8제2
항의 금지행위가 이루
어지지 아니하도록 자
동화된 계정 차단, 알
고리즘 투명성 확보 등
합리적 관리조치를 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
회는 제1항에 따른 관
리조치의 기준 및 권고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 ③ (생략)

④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 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82조의8을 위반한 자는 -----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0조의2(인공지능 생성물 이용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제82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제255조(부정 선거운동죄) ① ~ ④ (생략)	제255조(부정 선거운동죄) ① ~ ④ (현행과 같	<u>법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선전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인공지능 생성물 또는 이를 이용한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82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인공지능 생성물 또는 이를 이용한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가 제2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	---	--

⑤ <u>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⑥ (생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2. ~ 4.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	음) <u><삭제></u> ⑥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82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u>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③ ----- ----- -----
--	---	--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3. (생략) 4. <u>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u> 4의2.·5. (생략) ④ ~ ⑫ (생략)	----- -----. 1. ~ 3의3. (생략) 4. <삭제> 4의2.·5. (현행과 같음) ④ ~ ⑫ (현행과 같음)	----- -----. 1. ~ 3의3. (현행과 같음) 4. <u>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작·유통한 자. 다만, 영리 목적이 없거나 단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u> 4의2.·5. (현행과 같음) ④ ~ ⑫ (현행과 같음)
--	--	---